

#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8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“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”은 아이돌보미의 현황분석,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지원 및 돌봄서비스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기관임.
- 나.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
- 나. 위탁기간 : 3년(2022.1.1.~2024.12.31.)
-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 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
    - 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(여성가족부 지침, 광역거점기관)

○ 추진 필요성

-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돌보미 전문교육 지원, 현황관리 및 노무상담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력운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위탁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라. 위탁사무

-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현황 파악 및 점검 등
- 서울시 활동 아이돌보미 현황 파악 및 관리 지원
- 아이돌보미 교육 관련 업무지원
-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
- 사업운영실적 분기별 중간점검 분석보고서 작성·제출
-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참여
- 평가하위 10% 기관에 대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
- 그 밖에 시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

마. 위탁사무 개요

- 운영목적 :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지원 및 관할 지역 내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와 아이돌보미 활동상황 분석·조정·서비스 질 관리
- 운영방법 :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위탁
- 시설규모 : 기존 사무실 등 공동 활용
- 인력배치 : 7명(광역거점 3명, 모니터링단 4명)
- 자격요건
  -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전담인력 자격요건에 준함
    - ※ 건강가정사, 사회복지사, 보육교사2급 이상 등 아동양육지원 사업 분야 학사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
  -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전담인력으로 사업수행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자 우대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
사. 소요예산 : 320,105천원('21년 기준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2조(자녀양육지원의 강화)
 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, 방과후 서비스,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.
- 「아이돌봄지원법」 제4조(국가 등의 지원)
 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제3호, 제6조 제1호 및 제9호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아이돌봄담당관 돌봄공동체팀 지정주(☎2133-4812)